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년 5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5월 8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1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2002년 5월 14일 제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년 5월14일)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계층이 참여를 희망하고 활동범위도 다양해져 가고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사회개발·사회복지·주민보건·환경보전·기초질서계도·재난관리·문화예술 관광·체육·교육 및 청소년선도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평창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기능·운영 또는 위탁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6조등)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지원,자원봉사 주간운영, 자원봉사 보험가입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21일 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어 심의·보류되었던 것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 조례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위원장을 부군수 당연직에서 위원중 호선토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비영리 단체로써 6가지의 요건을 갖추도록 명문화시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었다고 보아집니다.
- 기타 법령형식·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부